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「항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81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11. 28. 시행)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·항공신체검사명령·양성 및 기량유지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,

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및 업무정지·지정취소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심사·항공신체검사명령·양성 및 기량유지 훈련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(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, 제28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1호의3, 제5호의3)
- 나.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업무 재조정(안 제26조제1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 삭제, 같은 조 제46호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제외한다) 및 항공교통관제사(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”를 “제외한다),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(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5호의2 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“항공교통관제사”를 “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8호의2 및 제4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

28의2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

46의2.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정취소
제26조제2항제1호 중 “항공교통관제사”를 “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법 제38조2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
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

5의3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
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의2. 법 제38조2제1항에 따른 <u>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</u>
11. (생략)	11. (현행과 같음)
12. 법 제4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(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) 및 항공교통관제사(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)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	12. ----- ----- ----- 제외한다), <u>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 교통관제사(지방항공청에 소 속된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 항공교통관제사-----</u> -----
12의2. ~ 15. (생략)	12의2. ~ 15. (현행과 같음)
15의2.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<u>훈련운영기준의 변경,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 및 같은 조</u>	<u><삭 제></u>

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
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
또는 수시 검사

15의3.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
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
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및 지
정취소

15의4.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
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
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
16. (생략)

17.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(「주세법」에 따른 주류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(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)

18. ~ 28. (생략)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16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18. ~ 28. (현행과 같음)

28의2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
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
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

29. ~ 46. (생략)

<신설>

47. ~ 60.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교통 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

1의2. (생략)

<신설>

2. ~ 5의2. (생략)

<신설>

교육훈련의 실시

29. ~ 46. (현행과 같음)

46의2.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정취소

47. ~ 60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-----
--

1의2. (현행과 같음)

1의3. 법 제38조2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심사

2. ~ 5의2. (현행과 같음)

5의3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

6. ~ 12. (생략)	6. ~ 1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⑫ (생략)	③ ~ ⑫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54